

알림) 고용보험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 또는 취소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또한 기처리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 과태료 규정을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자료 요구 및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관련 법 조항 안내 ※

☐ 과태료 부과 관련규정
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※ 과태료부과와 관련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(이하 “질서법”)이 다른 법률에 우선함
- 「고용보험법」 제15조 및 제118조, 동법 시행령 제146조(별표3)
-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에 관한 규정(예규 제27호, 2012.1.9.)
- 부과 기준(2020.8.28.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	법 제118조	10만원	20만원	30만원
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제1항제2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
※ 이직확인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건별로 부과합니다.

☐ 자료 요청 등에 대한 규정

- 「고용보험법」 제108조(보고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,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,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,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